

- 2015회계연도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



차 례

I. 성과분석 개요	1
II. 성과분석 결과	2
1. 총 평	3
III. 지표별 성과분석	4
IV. 개별기금별 성과분석	11
1. <u>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u>	11
2. <u>재난관리기금</u>	17
3. <u>노인복지기금</u>	23
4. <u>자활기금</u>	28
5. <u>여성발전기금</u>	33
6. <u>중소기업육성기금</u>	38
7. <u>식품진흥기금</u>	43
8. <u>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기금</u>	49
9. <u>도로굴착복구기금</u>	53
10. <u>옥외광고정비기금</u>	59
11. <u>광진구장학기금</u>	65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I 성과분석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기금운용성과분석)

□ 대상: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 등 11개

□ 분석방법

- 3개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기금정비(50점)	기금운용의 건전성(35점)	기금운용의 효율성(15점)	가 점(4점)
지표 항목	·기금정비율(35점) ·일몰제 적용률(1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경상적경비 비율(5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 기금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기금정비율은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 비교 평가(광역, 기초 구분 평가)

□ 분석지표 주요 개선사항

- 적립성기금 중 ‘청사건립기금’은 타회계의존율이 매우 높아, 특성상 성과제고를 위한 조치가 어려우므로 지표에서 제외

분 야	지 표	개선사항
기금 운용의 건전성	타회계(일반·특별)의존율(5점)	‘청사건립기금’도 지표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지표적용 제외대상: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기금

II

성과분석 결과

연 번	기금명	기금 정비율		일몰제 적용	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 집행율	경상적 경비	가 점
		금액 기준	수							
	평 균	10.23	8	100	66.6	93.1	77.2	83.7	100	0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설립기금	36,131	○	○	-	제외	0	60	100	-
2	재난관리기금	1,106	법 정	법 정	-	제외	70	-	100	-
3	노인복지기금	741	○	○	-	100	90	100	100	-
4	자 활 기 금	1,432	○	○	0	100	100	70	100	-
5	여성발전기금	492	○	○	-	100	80	-	-	-
6	중소기업육성기금	2,679	○	○	100	100	90	90	100	-
7	식품진흥기금	701	법 정	법 정	100	100	90	90	100	-
8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13	○	○	-	100	90	90	100	-
9	도로국책복구기금	892	○	○	-	100	80	80	100	-
10	옥외광고장기금	483	법 정	법 정	-	58.68	70	-	-	-
11	광친구장학기금	1,866	○	○	-	79.83	90	90	100	-

※ 타회계의존율 제외대상: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 계획대비기금집행률 제외대상: 재난관리기금

※ 자료값은 e-호조상의 지표산출 값

□ 기금운용 성과분석 종합결과

-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일몰제 적용, 경상적 경비 비율 3개 지표에서 2014회계연도 대비 기금운용 성과분석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 기금 정비율(기금 금액 기준), 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등 4개 지표는 2014회계연도 대비 기금운용 성과분석 점수가 하락함.

○ 잘된 점은

- 2014년, 2015년 기금관리 조례 정비에 따라 법정 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명시(일몰제 적용)로 성과분석 점수에 전년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고,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지출비율이 전년도 대비 낮아져 기금본래 목적을 적합하게 수행하였음.

○ 그러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가 전혀 없어 0점 처리 되었고,
- 「자활기금」으로 통합된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미회수 채권으로 채권관리적정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함.
- 타회계 의존율이 높았던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관리기금」이 분석 지표(타회계 의존율)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광진구장학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확보함 따라 타회계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향후계획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해야 할 사항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우리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음.

Ⅲ 지표별 성과분석

□ 기금 정비율

○ 기금 금액과 기금수

구 분	기금 금액 기준(15점)	기금 수 기준(20점)
개 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분석기준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기금수가 작을수록 바람직함 (※법정의무기금 제외)

○ 분석내역

- 기금 금액 기준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기금총액(A)	법정의무기금 총액(B)	지방채상환 기금(C)	통합관리기금 총액(D)	분석대상기금 총액(A-B-C-D)
423,247	45,606	2,292	-	-	43,314

- 기금 수 기준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기금수(A)	법정의무기금 수(B)	지방채상환 기금 수(C)	통합관리기금 수(D)	분석대상기금 수(A-B-C-D)
423,247	11	3	-	-	8

○ 분석결과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이 낮은 순서로 광역/기초 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5개구간을 10점~6점까지 부여하는데,
- 우리구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 10.23%로 2014회계년도 기초자치단체 평균 비율 3.6% 대비 6.6%높은 편이며,
- 기금 수의 경우 우리구 분석대상 기금 수 8개로 2014회계년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분석대상 기금 수 5.9개 대비 많은 편임.
- 기금금액이 높은 것은 우리구의 특수상황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관리기금의 금액이 높아서 불가피하나, 기금 수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일몰제 적용률

○ 개 요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 분석기준

-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함

○ 분석내역

일몰제 적용 기금수(A)	전체 기금수(B)	지표값 $C=(A/B)*100$	평가점수
8	8 (법정의무기금 제외)	100	100

연 번	기금명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규 정	조례제개정 일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5조제4항	10년	2015.10.30.
2	노 인 복 지 기 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7조제5항	5년	2015.10.30.
3	자 활 기 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8조제4항	5년	2015.10.30.
4	여 성 발 전 기 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9조제4항	5년	2015.10.30.
5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0조제5항	5년	2015.10.30.
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2조제5항	5년	2015.10.30.
7	도로굴착복구기금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4조제4항	5년	2015.10.30.
8	광진구 장학기금	광진구 장학기금관리조례 제2조제2항	10년	2012.11.28.

○ 분석결과

- 전체기금수(법정의무기금 제외)에 대한 일몰제 적용 기금 수의 비율을 5단계로 나누어 15~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 '15년도 기준으로 전체 기금(11개) 중 법정의무기금(3개)를 제외한 8개 기금에 대하여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존속기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 2014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일몰제 적용기금 수 1,060개, 분석대상 기금 수 1,407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75.3%로 우리구의 경우 100%로 높은 수준임.

□ 채권관리의 적정성

○ 개요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분석기준

-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 분석내역

(단위: 천원)

연 번	기금명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 점수
	계	43,269	3,344,437	66.66	66.66
1	자 활 기 금	43,269	43,269	0	0
2	중소기업육성기금	0	3,220,214	100	100
3	식 품 진 흥 기 금	0	80,954	100	100

○ 분석결과

- 채권대상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환경미화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있으며
- 전반적으로 채권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 자활기금의 미회수 채권 43,269천원은 자활기금으로 통합된 주민소민 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채권으로 42,469천원에 대하여 소멸등록 ('16.6월 처리로 미반영)하였으며, 현재 800천원의 미회수 채권이 남았음.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군입대, 해외연수, 휴학 등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여 졸업예정일을 산정 할 수 없어 상환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15회계연도 채권관리의 적정성에는 제외되어 있음.

□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개요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의 비율

○ 분석기준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 분석내역

(단위: 백만원)

연 번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결산총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계	585	12,520	95.32	93.16
1	노인복지기금	-	776	0	100
2	자활기금	-	1,463	0	100
3	여성발전기금	-	492	0	100
4	중소기업육성기금	-	4,022	0	100
5	식품진흥기금	-	1,149	0	100
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492	0	100
7	도로굴착복구기금	-	1,733	0	100
8	옥외광고정비기금	200	484	58.68	58.68
9	광진구장학기금	385	1,909	79.83	79.83

※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제외

○ 분석결과

- '15년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은 총 585백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이 지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광진구장학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확보함 따라 타회계 의존율은 전년수준 유지.
- 2014회계년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평균비율은 5.4%이며 2015회계연도 우리구 비율은 4.7%로 나타났으나, 올해부터 '청사건립기금'이 지표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년도와의 비교가 어려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개요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 분석기준

- 분석내역 항목 4가지 항목 중 4개 100점, 3개 90점, 2개 80점, 1개 70점, 0개 60점으로 평가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 “0”점처리

○ 분석내역

연번	기금명	①민간전문가50%이상	②민간전문가30%이상	③연간 2회 이상개최	④위원참석율 70%이상	평가점수
1	공공및공공용의 청사시설관리기금	N	N	Y	Y	0
2	재난관리기금	N	Y	N	N	70
3	노인복지기금	Y	Y	N	Y	90
4	자활기금	Y	Y	Y	Y	100
5	여성발전기금	N	Y	N	Y	80
6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N	Y	90
7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8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Y	Y	N	Y	90
9	도로굴착복구기금	Y	Y	N	N	80
10	옥외광고정비기금	N	Y	N	N	70
11	광진구장학기금	Y	Y	Y	N	90

○ 분석결과

- 공공및공공용의 청사시설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미구성으로 0점 처리되었으며,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가 연간 2회 이하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평가점수 소폭하락
- 민간전문가 비율이 낮은 기금은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높여 기금의 운용의 투명성 및 적정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계획 대비 기금집행율

○ 개요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재무활동제외)

○ 분석기준

- 100%가 가장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점처리

○ 분석내역

(단위: 백만원)

연 번	기금명	기금 총 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평가점수
	계	4,387	8,733	50.23%	83.75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266	3,800	7%	60
2	노인복지기금	34	34	100%	100
3	자활기금	30	20	150%	70
4	여성발전기금	0	0	-	-
5	중소기업육성기금	2,679	3,000	89.30%	90
6	식품진흥기금	446	489	91.21%	90
7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8	80	97.50%	90
8	도로굴착복구기금	842	1,265	66.48%	80
9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	-
10	광진구장학기금	42	45	93.33%	90

※ 재난관리기금 제외

○ 분석결과

- 당초 계획 대비 집행점수는 83.75점으로 전년도(85점) 대비 소폭 하락
- 2014년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평균 집행율 74.4%로 우리구 (50.23%)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집행율이 낮아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경상적 경비 비율

○ 개요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 분석기준

-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저하

○ 분석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계			0	4,416	0
1	공공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	-	-	266	100
2	노인복지기금	-	-	-	34	100
3	자활기금	-	-	-	30	100
4	여성발전기금	-	-	-	0	100
5	중소기업육성기금	-	-	-	2,679	100
6	식품진흥기금	-	-	-	446	100
7	환경미화원자녀학 자금대여기금	-	-	-	78	100
8	옥과광고정비기금	-	-	-	0	100
9	도로굴착복구기금	-	-	-	841	100
10	광진구장학기금	-	-	-	42	100

※ 재난관리기금 제외

○ 분석결과

- 2015회계연도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이 없어 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가졌으며,
- 향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경상적 비율을 낮추는 방안 유지 필요함.

IV

개별 기금별 성과분석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총무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5조
- 설치목적: 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설치년도: 199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266	10,131	266	9,865	36,131	2,203	5,750	△3,547	

II. 분석결과

1. 총 평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사 건립비 22,059백만원 동청사 건립비 5,180백만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3,000백만원 공공힐링센터 3,749백만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2,143백만원 총 36,131백만원을 조성함.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이월금의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등 효율적인 기금 조성·관리 및 운용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등의 확보를 통한 순차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 단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기 힘든 사업재원을 다년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청사·시설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 바, 계속 존치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86	1,383	99.8%	3,800	266	7%

※ '15년도 사고이월 : 금4,092백만원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주민에 대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기금 적립으로 주민의 복리향상 기대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 (1,386백만원)	○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 (1,383백만원)	99.8%
	○ 복합청사 신축 적립금 (19,466백만원)	○ 목표액 72,000백만원 대비 27% 적립	27%
'15년	○ 공공힐링센터 신축 (2,000백만원)	○ 공공힐링센터 신축 (154백만원)	7.7%
	○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개축 (1,800백만원)	○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개축 (111백만원)	6.1%
	○ 복합청사 신축 적립금 (22,059백만원)	○ 목표액 72,000백만원 대비 30.6% 적립	30.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조례	공용 및 공공 공공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 공용 및 공공의 청사· 시설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 및 적립에 의한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간 시행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14	없음	
	'15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의 효율적 건립을 위해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은 필요치 않음
- 단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청사건립 등 대규모예산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
- 원만한 행정운영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바탕이 되는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치하여야 함

《 기금 준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준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신청사 건립	22,059백만원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은 70,000백만원의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움. 다년간 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상
② 동청사 건립	5,180백만원	동청사 건립은 10,0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년간 기금으로 적립하여 예산이 확보된 후 수행할 수 있음	상
③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3,000백만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사업추진 및 자금확보(2015년)부터 완공(2018년)까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상
④ 공공힐링센터	3,749백만원	공공힐링센터 사업추진 및 자금확보(2014년)부터 완공(201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상
⑤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2,143백만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사업추진 및 자금확보(2014년)부터 완공(201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상
합 계	36,13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구성방법	성 격	비 고
기타회계전입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이자 수입	
전년도이월금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	

-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구 청사의 조기 신축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4,800	%	27,649	%	36,397	%
	전입금	3,900	15.7	6,300	22.8	9,321	25.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482	82.6	20,575	74.4	26,266	72.2
	예수금						
	이자수입	418	1.7	774	2.8	810	2.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4,800	%	27,649	%	36,397	%
	비용자성사업비	5,610	22.6	1,383	5	4,359	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9,190	77.4	26,266	95	32,038	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안전치수방재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1998.10.15: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 제207호)
- 1999.3.26: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 제223호)
- 2002.12.20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정(통합 조례)(조례 제338호)
- 2005.4.15: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부칙(조례 제401호)
- 2011.9.9: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6조 제4항개정(조례 제73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38	638	710	△72	1,114	654	715	△61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재난관리기금은 총 56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462백만원)에 비해 107백만원 증가함. 집행액 증가원인으로는 메르스 관련 집행액 43백만원 및 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물품구매 17백만원 등이 있음.
- 주요 지출사항은 풍수해 대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69백만원), 관내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329백만원), 자양1배수문 외 7개소 정밀점검 및 군자수문 비 구매(60백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방송장비 교체(41백만원)이며,
- 그밖에, 안전한국훈련 물품구매(4백만원), 메르스 방역소독비 지출(43백만원),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물품 구매(3백만원), 안전한 마을 구축을 위한 물품구매(17백만원)에 집행함.
- 아울러,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이 자연재난(풍수해, 제설) 위주로 사용하였으나,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한 마을 구축 관련 물품을 구입함으로써(21백만원)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10	462	75.7	710	569	80.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관로 개선사업(329,305천원)
 - 저지대 침수취약 주택에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벽)을 지원하여 불시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
 - 중곡제일시장 주변의 2개소 하수관로 확대개량 실시설계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준설(69,499천원)
 - 중곡 등 5개소 펌프장 유지에 필요한 장비 구매, 시설 관리, 유지보수 등에 지출하여 침수 예방
- 자양1배수문 외 7개소 정밀점검 및 군자수문 문비 설치(60,335천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관내 국가하천수문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매 및 재난방송용 방송장비 구입(41,180천원)
 - 자양1동 주민센터 재난방송 장비 교체
- 안전한국훈련 물품구매(4,133천원)
 -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안전한 마을 구축을 물품구매(17,545천원)
 - 안전한 마을 구축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구매
- 재해응급 복구비(47,649천원)
 - 관내 다중이용시설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취약계층 폭염관련 물품지원으로 재난 예방활동 강화
- 지진가속계측기 설치사업(미지출)
 - 신청사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재검토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조례 제16조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 조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안정적 확보	○ 지하주택침수방지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유지관리 ○ 빗물펌프장 유지 준설 ○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 재해응급복구비 ○ 광장배수문 등 4개소 정밀점검	○ 완료 ○ 완료 ○ 완료 ○ 미완료 ○ 완료 ○ 완료	-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사항 없음	-
	'14	해당사항 없음	-
	'15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지하주택 침수방지	200,000천원	○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침수방지사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지출이 필요	상
②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100,000천원	○ 중곡 등 5개소 펌프장 유지에 필요한 장비구매, 시설 관리, 유지보수 등에 지출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지출이 필요	상
③ 빗물펌프장 유지 준설	80,000천원		상
④ 지진가속계측기 설치사업	150,000천원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청사에 지진가속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 신청사 설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	중
⑤ 재해응급 복구비	100,000천원	○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매년 예비비 차원에서 필요	상
⑥ 자양배수문 외 5개소 정밀점검	50,000천원	○ 자양1배수문 외 7개소 정밀점검	상
⑦ 사무관리비 (폭염 등 재난대비)	30,000천원	○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및 재난대비 훈련 추진	상
합 계	71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약 60%)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에 의거(보통세 최근 3년 수입결산액의 평균 1% 적립) 의무적립금(약 38.5%) 및 이자수입(약 1.5%)으로 재원을 조성함
- 재원조달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매년 의무적립 기준액을 일반회계에 편성·적립함에 재원조달의 안정성은 우수함
- 기금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복잡·다양한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 대비에 집중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우리구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자연·사회 재난(제설, 산불, 감염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및 안전문화운동 활동 등에 사용범위 확대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489	%	1,500	%	1,451	%
	전입금	543	36.5	585	39	618	42.6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23	62	891	59.4	813	56
	예수금						
	이자수입	23	1.5	24	1.6	20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489	%	1,500	%	1,451	%
	비용자성사업비	517	34.8	462	30.8	569	39.3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81	5.4				
	예탁금						
	예치금	891	59.8	1,038	69.2	882	60.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사회복지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7조
- 설치목적: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 설치년도: 1996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54	25	34	△9	745	15	36	△21	

II.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정부 주도하에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등 민간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이들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필수적임.
- 이 경우 민간기관의 자금확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된 기금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재원의 공급은 향후 노인복지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다행히도 광진구는 안정적인 초기의 적립금 7억원을 바탕으로 가장 보수적이면 가장 안정적인 우량은행인 우리은행에 1년 만기 정기적금에 예탁함으로써 인해 재원의 안전성을 100%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회계연도 3,300만원의 집행율 100% 시행했으며, 2016회계연도도 100% 집행 될 예정이며 광진구 총 11개 기금중 가장 효율적인 기금운용실적을 기록 중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28.9	100	34	3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4, 2015회계연도 사업비 대비 집행실적이 100%이고 2016회계연도도 목표대비 100% 달성을 이를 전망으로 100% 집행실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노인복지기금의 존치의 목적에도 매우 부합되는 상황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지원사업 17백만원 - 상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4백만원 - 경로당지도자수련회지원: 4백만원 - 하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3백만원 - 노인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 노인교실지원 : 1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지원사업 17백만원 - 상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4백만원 - 경로당지도자수련회지원: 4백만원 - 하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3백만원 - 노인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 노인교실지원 : 12백만원 	100%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지원사업 20백만원 - 상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4백만원 - 경로당지도자수련회지원: 7백만원 - 하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3백만원 - 노인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 노인교실지원 : 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지원사업 20백만원 - 상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4백만원 - 경로당지도자수련회지원: 7백만원 - 하반기대한노인회사업비 지원 : 3백만원 - 노인체육대회지원: 6백만원 ○ 노인교실지원 : 13백만원 	9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조례 제16조	○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	○ 노인회 각종 사업지원 - 정기총회 및 지도자 교육 - 노인체육대회 개최비용 ○ 노인교실지원 - 11개 노인교실 운영자금 지원	완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
	'14	없음	-
	'15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회 지원사업	20,600	○ 예산으로 편성 시 재원조달의 안정성 결여로 지속적인 노인관련사 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필요	상
② 노인교실 지원사업	23,200		상
합 계	33,800천 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현재 기금은 초기의 적립금 7억원을 우리은행에 1억씩 7개 계좌와 1천만 짜리 3개 계좌 총 10개 계좌에 1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약 연 2,0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진비씨카드 사용 적립금이 연 20만원정도 발생하여 기금의 적립의 적정성은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건전한 상태임.
- 기금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는 사회 곳곳에서 여러 현상을 야기하는 바, 현재 대한노인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대한은퇴자협회등 노인관련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는 여러 노인복지관련 지원 사업은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원이 가장 중요한 바, 금리 인하 및 민간기관의 자금 조달의 한계점을 감안해 볼 때 관에서 더욱더 재원의 확보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줄 필요성이 증대된 바 노인복지기금의 점차적인 재원의 증액이 조심스럽게 추진 되어 할 필요성이 도래했다고 본다. 향후 구청 차원에서 도 기금 확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783	%	784	%	77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60	97	760	97	754	96.9
	예수금						
	이자수입	23	3	23	3	23	3.0
	기타수입					1	0.1
지 출	합 계	781	%	783	%	784	%
	비용자성사업비	23	3	31	3	33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60	97	753	97	745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자활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사회복지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12.10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근거 마련
- 2009 : 일반회계 200,000천원 기금 출연
- 2011.11.1 :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18	44	30	14	1,432	46	36	△1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타기금 전입금, 자활근로사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성되었음.
-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한 성격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통합하여 조기 자금 확보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였음.
- 기금 통합을 통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기 달성한 바, 지역자활센터의 기능보강과 운영활성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 창업자의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출등 다양한 자활경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복지구현을 위하여 추진할 예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0	0	20	30	1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 자업자금 대여 : 20백만원	○ 서울시 자활기금을 대출 - 우리구 자활기금 미대출	97%
'15년	○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 임가공사업단 건물임대료 : 20백만원	○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 임가공사업단 건물임대료 : 30백만원	0%

- 지역자활센터내 [임가공사업단]이 구 자양1동주민센터 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 공간이 협소하고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진구 아차산로 40길 62(자양동)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임대료가 당초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집행실적 증가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금 관리 조례제18조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광진구 저소득주민 의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충당	○- 자활기업의 자업자금 대여 ○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차보전 ○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등	100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조성 목표액 : 1,000백만원
- 조성액(2015. 12월말 현재) : 1,432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
	'14	없음	-
	'15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존치	상
② 자활공동체 등 전세점포 임대지원	3,000천원	"	"
③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	"
④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이차보전등	-	"	"
합 계	3,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유사기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의 통합으로 목표액이 달성되었으며, 향후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 매출금등의 자활 기금화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관리로 재원조성이 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금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로 선 순환적 복지 구현을 위하여 존치가 필수적인 기금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547	%	1,419	%	146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40	16	40	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58	81	1,228	87	1,418	99
	예수금						
	이자수입	49	3	44	3	44	1
	기타수입			106	7		
지 출	합 계	1,547	%	1,419	%	1,462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20	1			30	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00	20				
	예탁금						
	예치금	1,227	79	1,418	100	1,432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가정복지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9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 설치연도 : 2005년
- 목표액 : 총 5억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70	22	0	22	492	9	0	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5년에 설치되어 5억원을 목표금액으로 출연금 4억원과 이자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14년도 여성이 즐겁게 일하는 광진 만들기를 주제로 제19회 여성주간 행사에 기금 8,782천원을 지원하여 유공자 표창, 여성일자리 상담부스 운영, 가정폭력예방 및 출산장려정책 캠페인 실시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함
- 최근 이자율이 2015년 2.19%, 2016년 1.85%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양성평등기금의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	9	100%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4년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여성주간행사 8,782천원을 지원하여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여성주간행사(10백만원)	○ 여성주간행사(9백만원)	9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9조	남녀평등촉진과 여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	○ 여성권익증진 사업 ○ 여성단체 육성 및 사회참여활성화 ○ 여성복지 증진 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현재 기금 4억7천만원을 적립한 상태로 기금재원 목표액(5억원) 대비 93.8%로 조성되었으며 이자 수익금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목표액 달성이후 이자수익금으로 양성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
	'14	없음	-
	'15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촉진, 여성안전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	-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정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함	상
합 계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재원의 성격 : 구 출연금 및 이자수익
 - 재원의 규모 : 492백만원
 - 출연금 현황

총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4년
4억원	1억원	0	1억원	1억원	1억원	0

-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 1억원, 2007년 1억원, 2008년 1억원, 2009년 1억원 총 4억원을 적립하였으나 2010년 이후 부터는 구의 재정사정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적립금의 이자만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 최근 이자율이 2015년 2.19%, 2016년 1.85%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양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여성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 출연금 지원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73	%	479	%	49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68	98.9	464	97.0	470	95.5
	예수금						
	이자수입	5	1.1	15	3.0	22	4.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73	%	479	%	492	%
	비용자성사업비	5	1.1	9	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	0.8				
	예탁금						
	예치금	464	98.1	470	98.1	492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일자리경제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5 설치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0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79	3,242	2,679	563	1,342	2,672	3,000	△328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도 30억 규모로 지원계획 하였으나 서울시 및 중소기업청의 대규모 저금리 자금 자원으로 구 기금 신청업체 감소하였음.
- 30억중 27억 집행 (목표율 대비 89.3%)
- 메르스 피해업체를 돕기 위하여 기금을 긴급 추가지원하는 등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였음. (6개업체 5억원 지원)
- 기금신청시 위탁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협조하여 사전 심사 진행으로 용자 실행률을 높이고 및 대출기간을 단축하였음.
- 현재 기간도래 채권중 미수채권없이 걱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경영 자립도를 높이고, 운영자금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02	3,110	124	3,000	2,679	8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전을 돕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 관내 중소기업체가 낮은 금리로 기금을 용자받아 경영안전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표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용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용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사업 2,502백만원	○ 18개 업체, 3,111백만원	124%
'15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사업 3,000백만원	○ 24개 업체, 2,679백만원	89.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금 관리조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 지원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자금 용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중소기업 경영 운용에 필요한 자금 저리 용자하여 경영안전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없음	-
	'14	없음	-
	'15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융자사업	3,000백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업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 용자금 원금수입,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 재원의 성격과 규모
 - 용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한 원금(2, 8월)과 1.5%의 이자수입(2, 5, 8, 11월)이 기금수입의 주요 재원임
 - 현행대로 용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을 통한 기금 환원 방식으로 운용함이 적합
-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별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업의 용자수요를 충족하고 기금 용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562	%	3,890	%	4,02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80	61	3,209	82.5	3,220	80.1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731	89	646	16.6	779	19.4
	예수금						
	이자수입	51	1	35	0.9	22	0.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562	%	3,890	%	4,021	%
	비용자성사업비	8	0.1				
	융자성사업비	3,908	85.7	3,111	80	2,679	66.6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46	14.2	779	20	1,342	33.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보건위생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정('02.12.20, 조례 338호)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03.1.1, 규칙 247호)
- 설치목적 :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 설치연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89	259	447	△188	701	280	508	△228	

II.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의 주된 사용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관련 용자·지원이며 2014년에는 시설개선자금 80,000천원(1개소),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00,000천원(3개소)로 1억 8천만원, 2015년에는 시설개선자금 110,000천원(2개소), 150,000천원(3개소)로 2억 6천만원으로 다소 용자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임.
- 그간 용자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완급조절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기금운용 건전성 유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과징금' 및 '건강기능식품과징금' 등으로 조성하고,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식품위생 및 구민건강 증진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94	381	77	489	446	91.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적극적인 목적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음식문화개선사업인 '음식점 나트륨사용 줄이기 사업'은 주민의 호응 속에 사업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음식 싸주기 사업은 지양하고 온차림 반차림 실천업소 권장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진흥기금 융자(300백만원) ○음식문화 개선(40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48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82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2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진흥기금 융자(180백만원, 4개소) ○음식문화 개선(34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39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94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34백만원) 	77%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진흥기금 융자(300백만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30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47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74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3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진흥기금 융자(260백만원, 5개소)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37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40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76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33백만원) 	91.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달성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광진구기금관리 조례 제21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사업추진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 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식품위생관련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지원 등	적정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식품진흥기금 관리 부적정	2010년 사항 지적
	'14	해당사항 없음	
	'15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이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바, 현재의 목적사업이 목표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사업 변경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용자	300,000천 원	탄력적, 신축성 운용이 어려우며, 경기불황 등으로 시설개수를 원하는 업소가 적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 려움예상.	상
② 음식문화 개선	40,000천 원	목적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중
③ 우수·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	48,350천 원	“	중
④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82,020천 원	“	중
⑤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홍보	24,000천 원	“	중
합 계	494,370천 원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 · 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재원구분	재원의 성격	규모(2015년도)
시비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징수교부금 (시: 40%, 구: 60% 귀속) · 자치구 위생평가인센티브 교부금 등 	131,242천원(50.6%) 20,400천원(7.7%) 시 교부금은 식품진흥기금 계획변경 편성사용
기금운용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이자수입 · 융자금 회수금(이자포함) 	27,786천원(10.8%) 79,685천원(30.9%)

- 기금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위생과징금 징수액의 경우 2014년 167,902천원, 2015년 131,242천원으로 최근 증가추세였으나 2016년 8월부터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소유예의 경우 영업정지 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현재 30일에 비해 과징금 징수액 감소예상.
- 최근 특수·시범사업 확대실시로 타 기금에 비해 사업비지출이 많아 기금 고갈 우려로 융자사업 중심으로 기금운용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입	합 계	1,035	%	1,271	%	1,148	%	
	전입금							
	보조금	10	1	38	3	20	1.8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22	31.2	243	19	79	6.9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09	58.9	808	64	889	77.4	
	예수금							
	이자수입	17	1.7	11	1	27	2.4	
	기타수입	75	7.2	167	13	131	11.5	
지출	합 계	1,036	%	1,271	%	1,148	%	
	비용자성사업비	65	6.4	84	6.6	186	16.2	
	용자성사업비	50	4.8	180	14.2	260	22.6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10	10.7	117	9.2			
	예탁금							
	예치금	808	78.1	889	70	701	61.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청소과)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2조
- 설치목적 :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
- 설치년도 : 199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11	81	78	3	488	43	80	△37	

II. 분석결과

1. 총 평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중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재원은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음.
- 2015년도에 상·하반기 2회 총22명에게 77,684천원(상반기 11명 41,634천원, 하반기 22명 36,050천원)을 대여하였으며, 2015년도 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은 학자금 상환금 65,446천원과 이자수입 15,371천원으로 총 80,817천원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51	64%	80	78	9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근로복지 향상
-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 근로능력 향상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학자금대여사업 (80백만원, 20명)	○ 학자금대여사업 (51백만원, 14명)	64%
'15년	○ 학자금대여사업 (80백만원, 20명)	○ 학자금대여사업 (77백만원, 22명)	9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2조	- 광진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재직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사항 없음	-
	'14	해당사항 없음	-
	'15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학자금대여 사업	78백만원	신축적 집행, 안정성	상
합 계	5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2015년도 예치금 : 410,795천원
 - 학자금대여 상환금 : 65,446천원
 - 이자 수입금 : 15,371천원
- '13년도 ~ '15년도 수입과 지출 실적 : 「별첨」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14		'15	
수 입	합 계	420	%	462	%	46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1	12	73	16	66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58	85	382	83	411	
	예수금						
	이자수입	11	3	7	1	1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21	%	462	%	462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64	15	51	11	78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56	85	411	89	41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보고서(도로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9.05.31 : 광진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 2002.12.20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정
- 2003.01.01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3.10.08 : 201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수립
- 2014.10.01 : 2015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수립
- 2015.03.16 ~ 2015.12.16 : 2015년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시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60	1,173	841	332	892	1,212	1,278	△66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기금은 굴착도로 복구 및 굴착으로 인해 노후된 도로 정비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1,265백만원) 대비 집행실적(841백만원) 비율은 66%임.
- 전년대비 노후도로 정비면적은 증가(88㎡ → 137㎡)하였으나, 도로굴착 물량이 감소(1,887개소 32,081㎡ → 1,820개소 23,053㎡)함에 따라 기금 집행률이 감소함.
- 기금의 운용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수입 증가를 위해 단기 정기적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으로 14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현재 기금으로 추진중인 도로굴착복구사업은 유관기관 및 주민의 도로굴착공사 신청내용에 따라 연도별 사업규모가 결정되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복구물량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구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31	1,228	108	1,265	841	6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굴착복구사업 (1,131백만원)	○ 굴착복구사업 (1,228백만원)	108%
'15년	○ 굴착복구사업 (1,265백만원)	○ 굴착복구사업 (841백만원)	6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효과 : 신속한 굴착도로 복구 및 굴착으로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추진 내용
 - 도로굴착공사 복구 : 335개소, 면적 34.3a
 - 노후도로 정비 : 4개소, 면적 137.0a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금 관리조례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도로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 도로 굴착공사 시행도로 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 도로굴착공사장 점검 및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운영 ○ 도로 굴착 공사장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인건비 및 기타	100% (굴착복구 관련 사업에만 기금 사용)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상

- 2014년 기금사업 내용은 굴착도로 복구,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 정비, 굴착공사장 현장 점검을 위한 감독인건비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분	지적내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참여 없음(내부감사)	민간위원 위촉(3명)
	'14년	-	
	'15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도로굴착복구	841백만원	당해연도 유관기관의 도로굴착공사 신청시 징수되는 기금으로, 굴착도로를 신속히 복구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에 100%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공사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규모가 달라지는 특수성(신축적 집행 등)이 있어, 일반예산으로 편성·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상
합 계	84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도로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 2015년 도로굴착복구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1,159백만원)
 - 이자수입 :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이자 수입(14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 2014년 지출하고 남은 금액 이월(560백만원)
- 기금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라 굴착되는 도로를 적기에 복구하기 위해 운영중인 기금으로, 향후 수시로 진행되는 굴착 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유지, 운영할 계획임.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656	%	1,788	%	1,73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48	51	365	21	560	32
	예수금						
	이자수입	32	2	24	1	14	1
	기타수입	776	47	1,399	78	1,159	67
지 출	합 계	1,656	%	1,788	%	1,733	%
	비용자성사업비	1,291	78	1,228	69	841	4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65	22	560	31	892	5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도시디자인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6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 설치년도 : 2014년 8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1	412	-	412	483	167	317	△ 15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 8월 설치되어 2015년도까지 기금 예치를 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간판 개선사업,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실시 예정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경관 개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근래 증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현수막)등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간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해당사항 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08%
'15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6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 광진구기금관리 조례 제26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	-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 개선 사업 등)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불법 광고물 정비	-	-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간판개선사업	-	무분별한 불법 간판 난립으로 지저분한 거리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사업	상
②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	불법현수막 정비를 주말에도 실시함으로써 보다 더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할 수 있음	상
합 계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재원구분	재원의 성격	규모(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증지수입	19,468 (4%)
	기타수수료	1,770 (0.3%)
	이자수입	4,356 (0.9%)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895 (2.2%)
	과태료	169,191 (35%)
	기타수입	6,300 (1.3%)
	예치금	71,734 (14.8%)
	기타회계전입금	200,000 (41.3%)

- 기금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별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월 1회 이상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등으로 기금 재원 확보 및 불법현수막 게첨 억제 유도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에 따라 설치 되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 2016년 구의동 미가로 등 노후 불량 간판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간판 등을 정비하며 추후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대 맛의 거리, 양꼬치 거리등 점진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함으로써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83,714	
		%		%			%
	전입금					200,000	4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1,734	14
	예수금						
	이자수입					4,356	1
기타수입					207,624	43	
지 출	합 계					483,715	
		%		%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83,715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광진구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교육지원과)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광진장학회』 설립 ----- 1996.10.16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 제정 ----- 2005.11.17
 - 『광진구 장학위원회』 구성 ----- 2006. 2.14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 2012.11.2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75	433	42	391	1,866	434	43	391	

II. 분석결과

1. 총 평

-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5년 '광진구장학기금관리 조례'를 제정,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명에게 42,485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또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15년에 구출연금 414,710천원을 조성하였고 민간기탁금도 꾸준히 발생하여 기금운용수입의 하락에 대비할수 있었음.
- 현재 기금예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은행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2014년 2.48% → 2015년 1.85%) 향후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민간기탁금 조성 등 장학기금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3	43	100%	45	42	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광진장학금 지원 (43백만원, 24명)	○ 광진장학금 지원 (43백만원, 24명)	100%
'15년	○ 광진장학금 지원 (45백만원, 25명)	○ 광진장학금 지원 (42백만원, 24명)	9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5년 : 지속적인 이자율 감소에 따라 장학생 지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24명 지원)하였고 장학생 선발자 중 하반기에 교육비지원 중복 수혜자 1명 발생하여 장학금 지급금액이 감소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관리 조례	○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관내 성적이 우수하거나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원	-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없음	-
	'14	해당없음	-
	'15	해당없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광진구 장학사업	43,200천원	장학기금은 당초 민간 기탁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구출연금과 기탁금이 꾸준히 적립되고 있어 기금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중
합 계	43,2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5년 기금 조성액 : 1,863,350천원
 - 외부기탁금 : 778,350천원
 - 구 출 연 금 : 1,085,000천원
(’08년 300,000천원, ’09년 200,000천원, ’14년200,000천원, ’15년385,000천원)
- ‘광진구장학기금관리 조례’에 의해 구출연금, 외부기탁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외부기탁금의 경우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 장학금으로 기부(2015년 5,000천원)
- 광진구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운용기금 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 2013년도~2015년도 수입과 지출 실적(「별첨」 표4-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그 수입을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장학기금은 존치하여야 함.
- 기금조성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255	%	1,519	%	1,909	%
	전입금			200	13.1	385	20.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60	92.5	1,210	79.7	1,476	77.3
	예수금						
	이자수입	49	3.9	38	2.5	43	2.3
	기타수입	45	3.6	71	4.7	5	0.2
지 출	합 계	1,255	%	1,519	%	1,909	%
	비용자성사업비	44	3.5	43	2.8	42	2.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10	96.5	1,476	97.2	1,867	97.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